

라. 재획정 절차 및 방법(영 제9조3항 내지 제5항)

- 1) 새로운 경력(자격, 학력, 직명 변동 등)을 합산하는 경우
 - 대상자가 제출한 경력합산신청서(「보수지침」 별지 제1호 서식)에 의해 재획정
 - 호봉 재획정일 현재까지의 총 경력 + 새로운 경력 = 재획정 호봉
(경력환산율표 적용, 경력의 증명 및 조회 등은 초임호봉획정 방법 준용)
- 2)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
 - 가)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(징계)
 -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 9년, 정직7년, 감봉5년, 견책3년(징계기록말소기간)이 경과한 후 각각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함(징계처분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)
 - 승급제한기간: 강등·정직(18월), 감봉(12월), 견책(6월)
(단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소극행정, 음주운전(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), 성폭력,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월을 가산함)
 - 나) 영 제1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(근무성적평정점 최하등급)
 - 승급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후 승급기간에 산입
 - 승급제한기간: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6월
- 3)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: 해당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따름

3 정기승급

가. 대상 :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

나. 정기승급 요건(영 제13조 및 제14조)

-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 -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하며
 -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
 - 승급기간(승급에 필요한 기간)이 1년 이상이어야 함

다. 정기승급기간 : 공무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으로 1년

라. 정기승급일 : 매월 1일